

서울 행정 법 원

결 정

사 건 2019아10573 소송비용액확정
신 청 인 주식회사 부산은행
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0 (문현동, 부산은행 본점)
대표이사 빈대인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, 곽태훈
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주 문

위 당사자 사이의 이 2015구합50887,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,556,624원임을 확정한다.

이 유

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9. 5. 30.

사법보좌관

안우정



소 송 비 용 계 산 서

2019아10573

신청인 : 원고 (2015구합50887, 서울고등법원 2015누59015)

제1심 소가 : 45,367,910원, 제2심 소가 : 45,367,910원

(단위 : 원)

심급	비목	비용액	비고
1심	변호사보수	2,868,395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$2,100,000 + (45,367,910 - 30,000,000) \times 0.05$
	인지대	188,100	$(45,367,910 \times 0.0045 + 5,000) \times 0.9$ (전자)
	송달료	578	실제 지출비용 산입(환급액 34,922 제외)
소계		3,057,073	
2심	변호사보수	1,497,100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$2,100,000 + (45,367,910 - 30,000,000) \times 0.05 = 2,868,395$ 원이나,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함
소계		1,497,100	
본안비용소계		4,554,173	1심 3,057,073 + 2심 1,497,100
소송비용 확정신청	인지대	900	
	송달료	51	결정정본 34 + 모바일단문메시지 17 (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)
	발급비용	1,500	확정증명원 500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,000
신청비용소계		2,451	
합계		4,556,624	본안비용 4,554,173 + 신청비용 2,451

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4,556,624원